

##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7
----------	-----

제출연월일 : 2004년    월    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이유

- 현지성사무에 대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편의를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안전관리과】

-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도유 행정재산(하천, 제방)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위임사무 신설
- ‘지방재정법 제82조제5항에 규정한 도유 행정재산(하천, 제방)의 용도폐지’ 위임사무 신설

3. 의안전문 : 불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 임

5. 관계법령 발취 : 불 임

##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안전관리과 소관에 제31호 및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안 전 관 리 과	31	○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도유 행정재산(하천, 제방)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조
	32	○ 지방재정법 제82조제5항에 규정한 도유 행정재산(하천, 제방)의 용도폐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조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구조 문 대 비 표

【별표 1】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안 전 관리과	1~30	<생 략>		안 전 관리과	1~30	<현행과 같음>		
		<신 설>				31	○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도유 행정재산(하천, 제방)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충청북도공유 재산관리조례 제3조
		<신 설>				32	○ 지방재정법 제82조제5항에 규정한 도유 행정재산(하천, 제방)의 용도폐지	충청북도공유 재산관리조례 제3조

##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第95條 (事務의 委任등)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 또는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의 일부를 補助機關, 소속行政機關 또는 下部行政機關에 委任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 또는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의 일부를 管轄地方自治團體나 公共團體 또는 그 機關(事業所·出張所를 포함한다)에 委任 또는 委託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第82條 (行政財産 및 保存財産의 管理 및 處分) ①行政財産 및 保存財産은 이를 貸付·賣却·交換·讓與·信託 또는 代物辨濟 하거나 出資의 目的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私權을 設定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用途 또는 目的에 障害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收益을 許可하는 경우
2. 行政財産 또는 保存財産으로서의 性質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國家 또는 다른 地方自治團體에 讓與하는 경우
3. 國家·다른 地方自治團體등 다른 法人 또는 個人所有의 財産과 交換하여 그 交換받은 財産을 行政財産 또는 保存財産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②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財産 또는 保存財産의 사용 또는 收益을 許可한 경우에는 第83條第2項 및 第84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違背되는 행위는 이를 無效로 한다.

④行政財産 또는 保存財産의 사용·收益許可를 받은 者가 그 行政財産 또는 保存財産의 管理를 소홀히 하여 財産上의 損害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使用料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使用料의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加算金을 徵收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第84條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⑤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하여 行政財産 또는 保存財産으로 계속 存置할 필요가 없는 財産에 대하여는 公有財産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그 用途를 變更하거나 廢止할 수 있다.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관리사무 위임)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산소재지 시장·군수에게 도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코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후 사용·수익허가 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주어야 한다.

②행정재산·보존재산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삭제)
3.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